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658
----------	------

제출연월일: 2021. 9.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의 인권 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 및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인권협력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운영규약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제1조~제3조)
- 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제4조~제7조)
- 다.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등(제8조~제11조)
- 라.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위촉, 분과위원회 설치(제12조~제14조)
- 마. 경비부담 및 회계보고·결산 등(제15조~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나. 예산조치: 매년 본예산에 협의회 분담금 100만 원 반영
- 다. 협의회 운영규약: 별첨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3.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4.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5.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6.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의무)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 제6조(임원)**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 대행자는 호선한다.
- ④ 회장은 공문발송 및 회계업무 등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모든 재원 및 경비집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

제8조의 1(회의방법) 협의회 회의는 참석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방법으로 개최한다.

제9조(의안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 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장

소속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륜과 학식을 갖춘 외부 인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매년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0조(가입과 탈퇴)

- ① 본 협회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 본 협회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회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 본 협회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협회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 협회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 총 22개 지방자치단체 (제4조 관련)

(2021. 8월 31일 기준)

지 역	지 자 체 명
서울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경기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고양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서 분담금 납부 필요

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안 제5조(의무) 및 제15조(경비부담)

-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연 1회 분담금 납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행정7급 임정주 (연락처 ☎ 02-2286-5059)